

태풍 「루사」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

의 변	안 호
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02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태풍 「루사」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·지방교육세를 감면하여 조기에 경제적·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가. 감면근거

지방세법 제9조의 2【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】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.

나. 감면대상

- 농경지 매몰 및 유실 토지 소유자
- 농가 단위 피해율 30%이상 농가
- 주택 등 건축물 반파 이상 부속토지 소유자

다. 감면세목 :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·지방교육세 전액면제

라. 감면세액 : 9,965,720원

- ┌ 종합토지세 : 7,793,110
- ├ 도시계획세 : 615,360
- └ 지방교육세 : 1,557,250

3. 피해납세자 지방세 감면 내역 : 불 임